

II - 8	제 목	공사업 등록기준(8)(자본금 미달시 보완)	
회신일자	2005년 9월 30일	회신방법	산자부 사이버민원실
의 요 지			
○ 전력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문의 드리고자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3항의 등록기준 신고 시 자본금은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평가 받아 업법상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질의) 그러나 평가받은 자본금이 2억원이 안될 시에 등록기준 신고를 할 수 없는지 동 사항으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고 자본금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등록기준 신고 미필로 인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			
회 신 내 용			
답변) ○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등록기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○ 등록기준신고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. ○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은 상시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			